

군정질문 답변서

- 2 일 차 -

□ 질문일시 : 2017. 09. 08.(금) 10:00 ~

□ 질문의원 : 1명

○ 김향란 의원 : 3건 (군수님 2, 부서장 1)



거창군

군정질문 답변서

질문일시 : 2017. 09. 08.(금) 10:00

질문의원 : 김향란 의원

질문사항

1. 거창연국제 관련한 혁신위원회의 역할과
방향관련(거창군수)
2. 삶의 쉼터 확대 및 이전을 통한 접근성 증대와
지역경제 활성화 관련(거창군수)
3.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 관련(도시건축과장)

군정질문 답변요지 (거창군수)

질문요지

- ① 거창연극제와 관련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과 방향은 무엇인지요?

답변요지

- ① 번 질문에 대하여
 - 거창군 연극제 혁신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인데,
그간 진흥회측 연극제와 문화재단측 연극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된 연극제로 지향할 예정입니다.

군정질문 답변내용

[답변 : 군수님]

□ 거창군수 양 동 인입니다.

-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
질문을 주신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
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
 - ▶ 질문하신 내용 중
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한 혁신위원회의
역할과 방향에 관한 질문과
삶의 쉼터 확대 및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
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,

 - ▶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
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?

~ 군의장, 김향란 의원님께 동의 구함 ~
~ 김향란 의원님 이에 대한 양해 ~

 - ▶ 양해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□ 먼저, 거창연극제와 관련한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

- 거창군 연극제 혁신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인데, 그간 진흥회측 연극제와 문화재단측 연극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된 연극제로 지향할 예정입니다.

근정질문 답변요지 (거창군수)

□ 질문요지

- ① 현 거창병원 매입노력 등 삶의쉼터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?
- ② 노인과 장애인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쉼터에 대한 입장은?
- ③ 삶의 쉼터의 이용자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은 없는지?
- ④ 기부자들과 협의하여 무료급식 대신 무료쿠폰제 실시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?
- ⑤ 쉼터 이미용 사업을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완전 폐쇄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 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?

□ 답변요지

- ① 번 질문에 대하여
 - 삶의쉼터는 공사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08. 6. 26 개관 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.
 - 노인·여성복지관은 731명 수용가능에 551명, 장애인복지관은 110명 수용가능에 90명 이용으로 포화 상태는 아님.
 - 추가 건물 매입 많은 예산 소요, 삶의쉼터 이전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.
- ② 번 질문에 대하여
 - 당초 삶의쉼터는 1명의 관장아래 노인·여성, 장애인 통합복지관으로 건립을 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중에 있음.
 - 빈부귀천, 성별, 종교에 상관없이 노인, 여성, 장애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면서 서로 부대끼며 조화롭게 생활을 함.
 - 또한 각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고, 식당만 공용으로 이용함으로 큰 문제는 없음.

③ 번 질문에 대하여

- 삶의쉼터는 노인·여성·장애인 복지관으로 「노인복지법시행규칙」 제24조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여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로써 노인3,071명, 여성439명, 장애인 941명, 재가복지 443명으로 회원수 총 4,894명임.
그중 수급자는 632명, 차상위계층 99명, 일반인 4,163명임.
- 차후 설문조사 등 상세한 이용자 분석을 통해 발전되도록 하겠음.

④ 번 질문에 대하여

- 기부자와 협의하여 승낙할 경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.

⑤ 번 질문에 대하여

- 노인복지관 월 80명, 장애인복지관 월 20명이 이·미용을 이용하였으나, 노인복지관은 6월부터 중단, 장애인복지관은 월 4회에 매회 5명 정도 한정 하고 있음.
- 홍보를 통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음.

군정질문 답변내용

[답변 : 군수님]

다음으로

“삶의쉼터 확대·이전을 통한 접근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”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각종 복지기관의 위치 선정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

○ 복지기관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거리,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삶의 쉼터가 이용자가 많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타 지역의 실태에 대해서는

○ 타 지역도 우리 거창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□ ‘노인과 장애인,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쉼터에 대한 견해’에 대해서는

- 당초에 노인·장애인·여성 모든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.

□ 삶의 쉼터 이용자 현황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.

- 삶의 쉼터는 「노인복지법시행규칙」 제24조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빈부귀천, 성별, 종교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여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써 노인 3,071명, 여성 439명, 재가복지 서비스이용자 443명 등 총 4,894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
- 그 중 수급자가 470명, 차상위계층이 47명, 일반인이 4,377명입니다.
-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삶의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□ ‘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가로 질러야 하는 위험하기까지 한 쉼터 위치에 대한 견해’에 대해서는

○ 국도 옆이라 위험하기는 하나 현재 셔틀버스가 1일 6회 24개소 정류장을 활용하여 하루 평균 250여명이 이용하는 등 어르신들이 최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□ ‘기부프로그램인 무료급식을 무료식사 쿠폰사업으로 전환 내지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’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‘현재 쉼터 이·미용 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·미용의 날을 정해서 협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이 어떤지?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.

○ 이·미용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4회 매회 5명 정도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, 거동불편 어르신들한테 무료 지원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.

‘무료급식 대신 쿠폰제를 통한 일반 식당 이용률 증가와 유동인구가 늘어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’에 대해서는

○ 쿠폰제 이용 연구 검토 후 시행이 되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‘군내 각종 복지기관의 위치 선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는지?’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질문과 같아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 삶의 쉼터의 위치를 거창병원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군정질문 답변요지 (도시건축과장)

□ 질문요지

- ①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?
- ② 도시계획도로 시행과정과 소로30-2취소와 30-4로 변경과정 설명
- ③ 소로 30-2가 도로기능에 적합한데 30-4로 불필요한도로를 낸 이유
- ④ 도시계획사업의 미리 보상한 사유?
- ⑤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변경횟수와 구체적인 내용과 도시개발 담당자가 제안 설명한 내용은?
- ⑥ 송정리 30-4 민원인 보상 누락과 맞은편쪽 도로선형이 굽은 이유?
- ⑦ 인근 주민의 동의없이 전주이설을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이유?
- ⑧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은?
- ⑨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민원발생 대상지와 위치는?

□ 답변요지

- ① 번 질문에 대하여
 - 송정리 도시계획도로(소로3-95호선) 관련행정 절차 보상계획 공고, 실시계획인가를 사업 시행중에 있음.
- ② 번 질문에 대하여
 - 도시계획도로(소로2-54호선)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주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골목길의 선형과 폭원에 맞게 폭8m에서 6m로 2001년 변경 결정 고시 하여 도시계획도로(소로3-95호선)으로 변경하였음.

③ 번 질문에 대하여

- 장기 미집행시설의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골목길의 선형에 맞춰 도로연장 및 폭을 축소한 사항임.

④ 번 질문에 대하여

- 2013년부터 시행하여 2016년 8월 준공된 도시계획도로(소로3-26호선)에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(소로3-95호선)에 동일필지가 편입되어 2013년 보상 협의 시 토지분할 없이 보상협의 된 사항임.

⑤ 번 질문에 대하여

- 2001년 장기 미집행시설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골목길을 활용 도로선형 및 폭을 변경 하였으며, 2016년 도시계획도로(소로3-95호선) 개설사업 시 종점부 굴곡이 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현재와 같이 직선화 변경 시행하였음.

⑥ 번 질문에 대하여

- 지장물 보상 누락사항은 현장 확인 후 추가 보상계획이며, 기존 도로 선형을 활용함에 따라 선형이 굽게 되었음.

⑦ 번 질문에 대하여

-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장되는 전주는 나대지인 공유지에 설치한 사항임.

⑧ 번 질문에 대하여

- 민원인과 협의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음.

⑨ 번 질문에 대하여

-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 중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, 민원 대부분은 보상가격문제 등이며,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나 결렬 시 수용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음.

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

[답변 : 도시건축과장]

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.

- 먼저, 우리군 지역 균형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향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.

김향란 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 관련하여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송정리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-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,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전 공람공고, 보상계획공고,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,
-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.

□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시행과정과 소로 2-54호선
취소와 소로 3-95호선 변경과정에 대한
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-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업 시행 전 공람 공고,
보상계획공고,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여
사업시행하고 있으며,
- 송정리 도시계획시설 소로 2-54호선 변경은
2001년 거창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시
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 열악한 군 재정을 고려
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골목길의 선형과 폭원에 맞게
도로폭을 8m에서 6m의 도로인
소로 3-95호선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
변경결정 하였습니다.
-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시 주민설명회,
주민알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한 사항입니다.

소로 2-54호선 도로 기능이 적합한데 소로 3-95호선으로 불필요한 도로를 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소로 3-95호선은 기존 골목길의 선형을 활용 예산을 절감시키는 노선으로 도로폭을 축소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.

도시계획사업의 미리 보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2013년부터 시행하여 2016년 8월 준공된 도시계획도로(소로3-26호선)에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(소로3-95호선)의 동일필지가 편입되어 2013년 보상 협의 시 토지분할 없이 보상협의 된 사항입니다.

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변경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 담당자가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2001년 장기 미집행시설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골목길을 활용 도로선형 및 폭을 변경 하였으며, 2016년 도시계획도로(소로3-95호선) 개설사업 시 종점부 굴곡이 심하여 현재와 같이 직선화로 변경하여 시행 하였습니다.

□ 송정리 30-4 민원인 보상 누락과 맞은편쪽 도로선형이 굽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송정리 30-4번지 지장물보상 누락사항은 현장사진 확인 후 추가 보상계획이며, 기존 도로 선형을 활용함에 따라 선형이 굽게 되었습니다.

□ 주민민원으로 제거한 전주를 주민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○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장되는 전주가 있어 나대지인 공유지에 이설한 사항입니다.

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민원인과 협의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.

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민원발생 대상지와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 중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 대부분의 내용은 보상가격 불만에 대한 민원이며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결렬 시 수용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

○ 감사합니다.